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2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고성미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입양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사항이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기 양육 부담 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입양부모를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하고, 입양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2)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출생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안은 입양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현행 제도에 맞게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입양부모를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하고, 입양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나)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이 출생아동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 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출생 양육에 필요한 지원이 보편·타당하게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 전달에 실질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**답변요지**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